

제 안 설 명 서

[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(안)]

영 주 시

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5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1. .

제 출 자 : 영 주 시 장

1. 개정이유

행정규제완화지침에 의거 체육시설 사용제한을 완화하고 규제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을 폐지하여 행정편의 위주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여 주민 편의을 도모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제7조(사용제한) 및 제8조(입장의거절 및 퇴장)중 내용이 불분명하여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 해석으로 주민의 권익침해가 우려되는 기타 항목을 삭제함.(안 제7조 및 제8조)

나. 제16조(사용허가취소 및 정지) 제2항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, 손해배상 문제는 귀책사유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 함.
(안 제16조제2항)

3. 개정조례(안)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(안)

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4호, 제8조 제5호 및 제16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【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개정조례(안)】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사용제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.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.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. 기타 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	<p>제7조(사용제한)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2. 3. <p><삭 제></p>
<p>제8조(입장의 거절 및 퇴장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. 술에 만취된 자 3.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.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5.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	<p>제8조(입장의 거절 및 퇴장)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2. 3. 4. <p><삭 제></p>
<p>제16조(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)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.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.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	<p>제16조(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) 시장은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2. 3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【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(안)】

현 행	개 정 안
4.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.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운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	4. 5. < 삭 제 >

의안검토보고서

1. 의안

- 의안번호 : 제157호
- 의안명 :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(안)
- 해당부서 :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과(시민운동장)

2. 제안이유

행정규제완화지침에 이거 체육시설 사용제한을 완화하고 규제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을 폐지하여 행정편의 위주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제7조(사용제한) 및 제8조(입장의 거절 및 퇴장)중 내용이 불분명하여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 해석으로 주민의 권익침해가 우려되는 기타 항목을 삭제함(안 제7조 및 제8조)
- 나. 제16조(사용허가취소 및 정지) 제2항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, 손해배상 문제는 귀책사유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함(안 제16조 제2항)

4. 검토의견

-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(안)의 주요내용은
 - 본 조례 제7조제4호, 제8조제5호 및 제16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임.
 - 제7조제4호
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(규제내용불분명 폐지)
 - 제8조제5호
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(규제내용불분명 폐지)

- 제16조 제2항

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(주민권익침해우려 폐지)

○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
2000. 4. 3.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지침에 의거 체육시설사용제한을 완화하고 규제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을 폐지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2000. 11. .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순